

보도시점 2024. 3. 24.(일) 12:00 (월요일 조간) 배포 2024. 03. 22.(금)

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... 지역 의료기관 편의 신속하게 받는다

- 환경부·환경산업기술원, 환경오염 피해 구제 위해 군산의료원과 업무협약
- 전담 창구 운영을 통한 사전 예약, 일괄 진료·검사,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

환경부(장관 한화진)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원장 최홍진)은 군산의료원(원장 조준필)과 3월 25일 오전, 군산의료원(전북 군산 소재)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.

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,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*가 인정되었다.

* 만성신장염, 골다공증, 천식 등 총 27종 질환(KCD 3단위 기준)

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.

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·검사·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△사전 예약, △일일 방문 일괄(원스톱) 서비스 제공, △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.

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·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(원스톱)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.

아울러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·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(☎ 063-472-5483)를 통해 진료·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(☎ 02-2284-1850)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.

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업무협약서.
2. 업무협약 체결 계획. 끝.

담당부서	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	책임자	과 장	서민아 (044-201-6810)
		담당자	공업전문관	최재석 (044-201-6813)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	책임자	실 장	김동은 (02-2284-1840)
		담당자	연구원	임재호 (02-2284-1853)
	군산의료원 관리부	책임자	관리부장	권혁면 (063-472-5007)
		담당자	원무팀장	장용호 (063-472-5461)

서천지역 환경오염 피해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「지역 의료기관 이용 지원」 업무협약서

환경부, 군산의료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총칭하여 “협약기관”이라 한다)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지역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자(이하 “대상 주민”이라 한다)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,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「지역 의료기관 이용 지원」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 주민의 편리한 의료기관 이용 및 이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협약기관은 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되,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제3조(협약내용) 협약기관은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,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각 항목별 세부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- ① 대상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 진료·검사·치료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.
- ② 대상 주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후불제 이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- ③ 대상 주민의 의료원 이용을 위한 편의(예약, 진료 등)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- ④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효과적인 안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.
- ⑤ 협약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항목 외에 지원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 활동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.

제4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협약기관은 제3조의 협력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신의성실)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의 효력) ①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② 협약기관은 협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상호 서면합의를 통하여 1년을 한도로 매 협약 기간 만료 시마다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의 해석 및 변경)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협약기관은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) ① 협약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비밀유지) 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 이 협약이 기간 만료,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.

제10조(법적 구속력) 이 협약은 제8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3월 25일



환 경 부
장관 한 화 진



군산의료원
원장 조 준 필

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원장 최 흥 진

□ 일시 / 장소 : 2024.3.25.(월) 11:00 ~ 12:00 / 군산의료원(군산시)

□ 주요 참석자

- (환경부) 환경보건국장, 환경피해구제과장
- (한국환경산업기술원) 친환경안전본부장, 환경피해구제실장
- (군산의료원) 군산의료원장

□ 세부 일정

시 간	행 사 내 용	비 고
11:00~11:10(10분)	○ 차담회	군산의료원 원장실
11:10~11:15(5분)	○ 행사장 이동	
11:15~11:17(2분)	○ 개회 및 주요 내빈 소개	군산의료원 회의실
11:17~11:23(6분)	○ 기관 대표 인사말 -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- 군산의료원 원장 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	
11:23~11:28(5분)	○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	
11:28~11:38(10분)	○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 촬영 - 업무협약 내용 낭독 - 협약서 서명 및 상호 교환 - 기념 촬영	
11:38~11:40(2분)	○ 폐 회	
11:40~12:00(20분)	○ 군산의료원 시찰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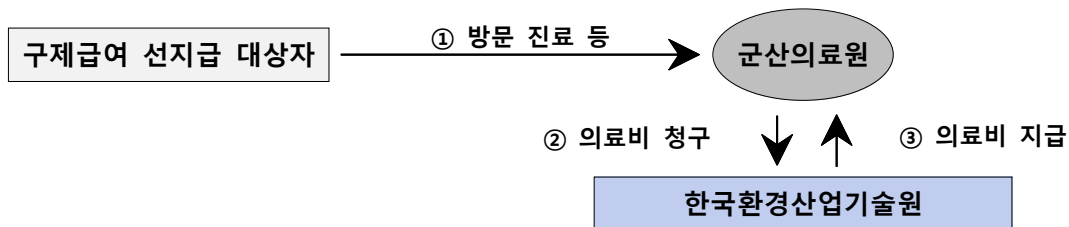
※ 상기 일정은 기관 또는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참고 1

의료비 후불제 개요

- 환경오염피해 인정의 진료 편의제고를 위해 **의료비 후불제 지원**
 - (대상자)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·검사·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 중 비급여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
 - (군산의료원)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 진료·검사 후 발생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(의료비)을 대상자 대신 **한국환경산업기술원**에 청구
 - (한국환경산업기술원) 의료비 지급여부를 검토·결정하고, 의료기관에 지급 대상자 및 요양급여 지급액 통보

< 의료비 후불제 운영 절차 >



참고 2

주요 질의응답

1. 진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?

- 서천지역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한 군산의료원 전담 창구(☎063-472-5483) 담당자와 통화하여 희망하는 진료일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.

2. 진료일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?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정밀검진 안내문과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)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됩니다.

3.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후불제로 지원하는 의료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?

- 후불제로 지원하는 의료비는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에 해당하는 진료·검진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. 비급여 항목과 인정질환 외 진료·검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
참고 3

환경오염 피해구제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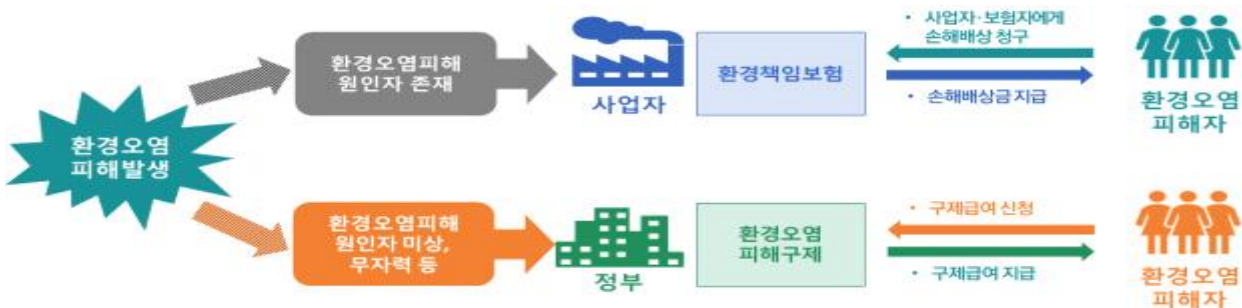
□ 환경오염 피해구제 체계

- 환경오염피해 원인자의 존부·자력 여부 및 피해구제의 시급성 등에 따라 원인자에 의한 배상(환경책임보험 포함)과 정부 구제로 구분
 - (원인자 배상)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원인자 직접 배상과 환경책임보험에 의한 배상으로 구분

<환경책임보험 개요>

-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, 법정시설(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등)이 있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(피구법 제17조)
- 특정대기·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약 15,000개 사업장이 의무 가입되어 있으며, 총 약 560억/년 보험료 발생

- (정부 구제) 원인자 배상 곤란 또는 시급한 경우 환경부가 구제 실시



□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 구조

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보상 구조			
배상책임한도 초과시	국가 (구제계정)	국가 (구제계정)	국가 (구제계정) - 배상한도초과시 - 원인자미상/부존재/무자력
배상책임한도 (최대 2천억원)	사업자(자력 또는 자율보험)	사업자 (자력 또는 자율보험)	
보험 보장한도 (30~300억원)	환경책임보험 보험사		
	보험가입 사업자	보험 미가입 사업자	원인자미상·무자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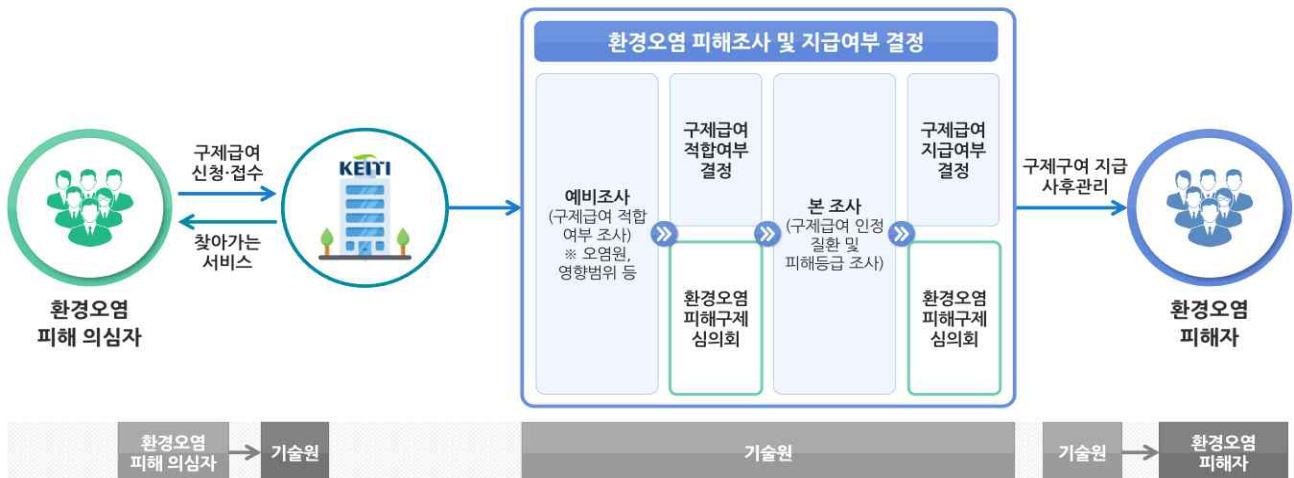
□ 구제급여 지급 관련

- (요건) △원인자 미상·존부불명·무자력, △배상책임한도(최대 2천억원) 초과 피해, △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
① 구제급여 지급 요건	② 구제급여 선지급* 요건
1. 원인자 미상·존부불명·무자력	1. 환경책임보험 계약·보장계약의 불성립/실효
	2. 보험자가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는 경우
2. 배상책임한도(최대 2천억) 초과	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 (선지급) 원인자 유무·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지급

- (절차) 피해구제 신청(피해의심자) → 접수(기술원) → 피해조사(예비·본조사·피해등급, 환경오염피해조사단) → 심의(위원회) → 지급(기술원)



- (심의기구) 3심제 운영

